

국제법 현안 Brief



국제법 현안 Brief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성원 교수(한양대학교)

편집위원 이기범 교수(연세대학교)

오선영 교수(충실대학교)

오시진 교수(강원대학교)

김현정 교수(연세대학교)

투고문의 ksilbrief@gmail.com

웹사이트 www.ksil.or.kr

국제법 현안 Brief는 국제법 관련 현안문제에 관해 간략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국제법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최근 현안과 관련된 국제법 쟁점에 대한 인식과 최근 국제법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국제법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의 미국의 ‘법 집행’ 과 국제법적 쟁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예준 부교수



사진 출처: Official White House Photo by Molly Riley (Public Domain)

1. 논의의 배경

2026년 1월 3일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군사시설을 포함한 주요 도시를 공습하고, 특수부대의 지상 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Moros) 대통령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Cilia Adela Flores de Maduro)를 미국으로 압송하였다. “확고한 결의 작전(Operation Absolute Resolve)”으로 명명된 이 작전에는 미 중앙정보국(CIA)과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포스 및 제160특수작전항공연대가 투입되었으며, 작전 완수까지 5시간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해당 과정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부대원뿐만 아니라 공습 지역 민간인을 포함하여 최소 80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 압송 수 시간 후, 미국은 마두로와 그 밖의 피고인 5인에 대한 나르코테러리즘(narco-terrorism) 공모 혐의, 코카인 및 기타 마약 수입 공모 혐의, 무기 소지 및 무기

소지 공모 혐의가 적시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기소장을 공개하였다. 플로리다 마러라고(Mar-a-Lago) 클럽에서 전 작전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작전이 본인의 명령에 따라 “법 집행(law enforcement)” 차원에서 수행되었고, “안전하고 적절하며 현명한 전환(safe, proper and judicious transition)”이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국정을 “운영(run)”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형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하여 “망가진 석유 기반 시설을 복구하고, 베네수엘라를 위해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¹

한 주권국의 통치자를 그 국가의 영토 내에서 군사력을 동원해 체포 및 압송한 미국의 행위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미국의 군사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사태 전개가 위험한 선례를 구성한다며 모든 국가의 국제법 존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사건 이틀 뒤인 1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러시아, 중국, 콜롬비아는 미국의 군사작전을 불법이라고 강하게 규탄하였지만, 대부분의 이사국은 미국의 행위를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 준수를 강조하였다. 한편, 긴급회의에 출석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 작전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쟁이나 점령이 아니며, “사법부로부터 기소된 두 명의 도주 피의자에 대한 미군 지원으로 수행된 정밀한 법 집행”이라고 설명하였다.² 또한, 유엔 헌장 제51조를 언급하며, 이번 작전은 미국의 고유한 권리로서 정당화되며 마두로 혐의에 대한 증거는 미국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하였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과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납치’는 국제법 질서의 핵심 원칙인 무력행사의 금지, 국가의 영토적 완전성 및 주권 존중, 국제법에 따른 국가원수의 불가침성에 대한 위반이다. 또한, ‘납치’로 인한 국가원수의 강제적 부재 상황은 주권국의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 위반을 구성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어디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여 검토해야 할지 의문이지만, 타국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발언은 베네수엘라 인민의 자결권에 반하며, 석유에 관한 발언과 일련의 조치는 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적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 나아가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자의적 구금이 문제될 수 있으며,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면제 인정 여부도 중요한 국제법적 쟁점이 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작전과 마두로 대통령 납치의 국제법 위반 여부는 상기와 같이 비교적 명백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법적 정당화 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파편적인 설명에서 도출되는 국제법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구성할 수 있다. 첫째, 타국 영역에서의 군사력을 동원한 ‘법 집행’은 국제법상 허용되는가? 둘째, 마약 밀매 혐의에 기초한 국가안보 위협 주장이 자위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셋째, 베네수엘라의 실효적 통치자인 마두로 대통령의 지위는 미국의 불승인과 평가에 좌우되는가? 이 글은 상기 질문들에 답함으로써 이번 사건에서 미국의 행위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행위가 선례로 용인되어서는 아니 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II. 타국 영역에서의 동의 없는 ‘법 집행’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2019년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후안 과이도(Juan Guaidó)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승인한 이후부터 급격히 악화되었다. 2020년 3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나르코 테러리즘 공모 등의 혐의로 마두로를 기소하였으며, 미 국무부는 마두로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 제공에 대해 최대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제시하였다. 이후 2025년 1월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되며 마두로에 대한 현상금은 최대 2,500만 달러로 인상되었다. 미 재무부는 2025년 7월 Cartel de los Soles를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하였으며, 8월 국무부는 이 단체의 수장으로 지명된 마두로에 대한 현상금을 최대 5,000만 달러로 추가 인상하였다.

이러한 전개 속에서, 이번 군사작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그나마 일관된 설명은,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도주 피의자에 대한 적법한 ‘법 집행’으로 요약된다. 즉, 베네수엘라에 대한 점령이나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법 집행기관과 연계하여, 체포영장 집행 인원의 엄호를 위해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전쟁에 이르지 않는 법 집행’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은, 국제사회를 향한 국제법 위반의 정당화 논거라기보다는, 해외 군사력 투입 시 의회와 협의 및 보고 절차를 규정한 1973년 전쟁 권한 결의(War Powers Resolution)법 상 국내적 대응 논리로 이해된다.³ 실제 작전 수행에 앞서 미 국가안보회의(NSC)는 미 법무부 법률자문실로부터 전쟁에 이르지 않는 ‘법 집행 지원 작전’이 미국 헌법적 관점에서 적법하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받았다.⁴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 상기 의견서는 1989년 12월 파나마 침공 및 마누엘 노리가(Manuel Noriega) 장군 체포에 앞서 검토된 논리를 활용하고 있다. 1989년 6월 미 법무부 법률자문실은 연방수사국(FBI)의 역외 법 집행이(미국법 체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였다.⁵ 동 의견서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 및 체포를 위해 FBI를 파견할 “고유한 헌법적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FBI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외 법 집행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체포가 적법절차에 관한 수정 헌법 제4조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의견서도

전제하는 바와 같이, 타국 영역에서의 집행관할권 행사는 주권 침해 행위로서 국제법상 금지되며, 해당 주권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는 국제범죄 피의자에 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96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을 아르헨티나 영내에서 납치한 사건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가 회원국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며 반복될 경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스라엘의 적절한 배상을 요청한 바 있다.⁶ 마약 밀매는 베네수엘라와 미국이 모두 당사국인 1988년 「유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 방지협약」 등 다자조약에 의하여 국제적인 형사사법 협력의 대상으로 규율되지만, 이는 타국 영역 내에서의 체포 및 납치를 통한 집행관할권 행사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군사력의 동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의 동의 없는 미국의 역외 법 집행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진 체포 및 강제 이송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9조 상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자의적 체포 및 구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은 ICCPR 비준 시 제1조 내지 제27조의 비자기집행 선언을 첨부하였고, 이에 따라 마두로의 재판을 진행하는 미국 법원에서 ICCPR이 직접 원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신 적법절차에 관한 미국 수정 헌법 제4조가 원용될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1989년 의견서는 해외에서의 체포가 국제법이나 외국법을 위반하더라도, 수정 헌법 제4조 위반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 미국 법원은 *Ker-Frisbie doctrine*에 따라 불법적인 납치에 의한 피의자 신병 확보의 경우에도 형사관할권을 인정해 왔다.⁷

III. ‘마약 밀매’ 혐의에 대한 ‘자위권’ 행사

다음으로 앞 절에서 별론으로 한 ‘군사력의 동원’ 부분과 마약 밀매에 대한 자위권 행사 주장을 연결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앞서 살펴본 미국이 주장하는 ‘법 집행’에 ‘무력’이 사용되었음은 자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 직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규모 타격’이 있었음을 자찬하였으며, 마러라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군사작전이 본인의 명령하에 ‘정규 군대’ 투입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미 합참의장 댄 케인(Dan Caine)도 법무부 요청에 따라 미국 사법부에 기소된 마두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반구 20개 지상·해상 기지에서 출격한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동원되는 등 항공·지상·해상 전력이 총망라된 대규모 합동작전”이 수행되었다고 밝혔다.⁸ 위와 같은 사실은 해당 군사작전이 관습국제법과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이 금지하는 ‘무력행사’에 해당함을 확인해 준다. 무력사용금지 원칙은 현대 국제법 질서의 초석이며, 강행규범의 지위에 있다. 동 조항에 대한 예외는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수권에 의한 무력사용과 제51조에 따른 개별적·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한정된다. 이 사건에서 안보리의 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반면, 자위권의 경우 흥미롭게도 미국의 발언에서 간혹 언급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사용금지에 대한 예외로서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라 선행한 ‘무력공격(armed attack)’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해석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을 통해 재차 확인된 바 있다. 유엔 헌장은 ‘무력공격’의 정의를 제시하지 않지만, ICJ가 니카라과 사건 판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무력공격을 구성하는 행위의 성격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합의”가 있다.⁹ 가장 전형적인 무력공격의 형태는 정규군의 공격이지만, 그 밖의 비정규군이나 무

장단체의 공격이라도 규모와 효과에 따라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 ICJ도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침략의 정의(Definition of Aggression)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제3314호를 이 판단에 활용함으로써 해당 결의가 무력공격의 정의에 참고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미국은 ‘법 집행’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수십만 명의 미국인의 생명을 앗아간 마약 테러에 직접 책임이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마약 밀매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나아가 주유엔 미국대사는 베네수엘라가 미국 내 마약 유입의 주요 경로이며,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Tren de Aragua 및 Cartel de los Soles의 미국 내 마약 밀매 활동이 미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¹⁰ 실제 미국은 2025년 9월부터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서 마약 밀매 의심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고, 12월 24일에는 테러단체로 지정한 Tren de Aragua가 사용했다는 이유로 베네수엘라 부두에 대한 CIA 수행 추정된 드론 공격도 있었다. 미국은 자위권 행사임을 시사했으나, 마약 밀매 단속을 위한 무력 대응은 관습국제법상 필요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마약 밀매가 특정 국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합의’에 비추어 가장 중대한 형태의 무력사용인 ‘무력공격’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테러와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마약 밀매 혐의가 인정되고,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 미국의 자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력행사는 유엔 헌장 제51조상 자위권 행사로 볼 수 없고, 무력사용금지원칙의 어떠한 예외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습국제법과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에 위반된다. 더욱이 해당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을 포함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

였는바, 이는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상 자의적 살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

Ⅳ. ‘국가원수’의 지위 및 면제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의 실효적 통치자인 마두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한다. 미국은 일관되게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의 ‘정당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강조해 왔다.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시, 마두로를 “정당하지 않은, 이른바 대통령(an illegitimate so-called president)”이라 표현하며 국가원수가 아니라고 단정하였다. 미국이 공개한 대배심 기소장도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근 선거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유지함으로써 현재는 사실상(*de facto*)의 그러나 불법한 통치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2025년 유엔 총회 신입장 위원회에 제출된 마두로 정권 신입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대표하여 마두로 측 대표가 제출한 신입장을 수락한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첨부하였다.¹¹

실제 2024년 7월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 2024년 7월 유엔 전문가 패널은 결과 공표 지연 및 법정 기한 미준수, 투표 결과 데이터의 접근성과 검증 가능성 부족, 국가기관의 편파적 활용 및 압력 의혹 등을 지적하였다. 미주기구(OAS)도 2024년 8월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투표 기록 공개를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당 선거 후 실효적으로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고 있는 ‘국가원수’의 지위를 상기와 같은 우려가 있다고 하여 국제사회가 개입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간혹 선거 감시 및 결과 확정에 관한 권한이 국제사회에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국내 선거 결과

에 기초한 정부의 지위는 비록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해당 주권국의 헌법 질서에 따라 판단된다.

국제법은 특정한 정치체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주권국의 정부 구성은 고유한 국내문제로서 각국의 헌법 질서에 따라 확정된다. 다만, 국제법상 주권국에는 단일한 법률상 정부가 존재함을 전제하므로, 한 주권국 내 복수의 실체가 국제 대표성의 맥락에서 ‘정부’로서의 지위를 다투는 경우, 실효성과 합헌성을 기준으로 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질 뿐이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헌법상 절차를 거쳐 집권하였으며, 실효적 통치를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단일하게 베네수엘라를 대표하고 있던 마두로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군부 쿠데타에 의한 기존 정부의 전복 상황이라거나, 명확히 확정된 선거 결과에 불복해 정권 이양을 지체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두로 정권의 권위주의적 성격이나 인권 의무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해당 정부의 국제법상 지위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엔에서 마두로 정부가 제출한 신입장이 수리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적 차원에서 마두로의 ‘국가원수’로서의 객관적 지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개별 국가의 정부승인이나 불승인은 양자 간 상대적 관계를 규정하는 정치적 행위로서 일정한 국내법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으나,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객관적 지위의 보장이나 부정과 직결되지 않는다.

2026년 1월 5일,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Delcy Rodríguez)가 마두로 대통령의 ‘강제적 부재’ 상황에 따라 임시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이 상황을 ‘일시적 부재’로 보아 대통령직 공석을 선언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마두로는 여전히 대통령직을 보유한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 간주된다. 관습국제법상 국가원수, 정부수반 및 외교장관은 재임 중 외국 법원의 형사관할권으로부터 인적 면제(*immunity ratione personae*)를 향유한다. 이는

지위에 기초한 면제로서, 재임 중 사적 또는 공적 자격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1월 5일 뉴욕에서 진행된 기소인부절차에서 마두로는 자신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라고 소개하였으며, 변호인은 마두로가 주권국의 국가원수로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미국 법원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두로의 국가원수 지위에 따른 면제를 인정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¹² 미국 법원은 유사한 상황에서 면제 대상의 지위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국무부의 면제 의견서 등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왔다. 파나마 노리가 장군 사건에서도, 법원은 그가 파나마의 사실상 최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리예가를 납치 및 소추한 행정부의 의도 등에 기초하여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기소장은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의 현직 국가원수가 아닌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부의 입장은 미국 법원에 의해 그대로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법원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면제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는 재직 중 국가원수의 인적 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미국의 국내적 해석 및 관행에 불과하다.

V. 나가며

2026년 3월 5일, 미국과 베네수엘라 임시 당국은 2019년 이후 단절되었던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재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미 국무부는 이번 합의가 베네수엘라의 안정 증진, 경제 회복 지원, 정치적 화해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의 평화적 이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단계적 과정에 집중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베네수엘라 임시정부도 별도 성명을 통해 상호 존중과 국가 주권 평등, 양국 국민 간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건설적 대화 단계로 나아갈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어 3월 30일에는 카라카스 주

재 미국 대사관이 공식 업무를 재개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양국의 관계가 ‘정상화’ 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가 이번 사태를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하거나 적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과 마두로 대통령 부부 강제 압송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법 집행’을 위한 정규군의 타국 영토 공격은 강행규범 지위에 있는 무력사용금지 원칙에 반한다. 마두로 대통령 ‘납치’로 인한 국가원수의 ‘강제적 부재’ 상황은 강압적 외부 간섭으로서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에 반하며, 베네수엘라 인민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미국의 정부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국가원수로서 이에 기초한 인신의 불가침성과 외국 법원의 형사관할권으로부터의 인적 면제를 향유한다. 미국 법원이 마두로의 국가원수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면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단은 관습국제법상 재직 중인 국가원수의 면제에 부합하지 않는 선례가 될 뿐이다. 미국 행위의 적법성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원칙에 비추어 판단되고 있다. 앞으로의 국제법 문헌은 이번 사태를 국제법 핵심 원칙에 위반되며 국제법 질서를 경시한 사례로 기록할 것이다.

- ¹ Full Remarks: Trump on U.S. operation in Venezuela to capture Maduro, *ABC News*, Jan. 4, 2026, <https://www.youtube.com/watch?v=KvuTnSq58rE>.
- ² Remarks at a UN Security Council Briefing on Venezuela, US Mission to the UN, Jan. 5, 2026, Ambassador Mike Waltz, U.S. Representative to the UN.
- ³ War Powers Resolution, Pub. L. 93-148, 50 U.S.C. §§ 1541-1548.
- ⁴ Memorandum for Legal Adviser, National Security Council, *Re: Proposed War Department Operation to Support Law Enforcement Efforts in Venezuela*,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Legal Counsel (T. Elliot Gaiser), Dec. 23, 2025.
- ⁵ Memorandum Opinion for the Attorney General, *Authority of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to Override International Law in Extraterritorial Law Enforcement Activities*,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Legal Counsel (William P. Barr), Jun. 21, 1989.
- ⁶ SC Res. 138, *Question Relating to the Case of Adolf Eichmann*, UN Doc. S/RES/138 (23 June 1960).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스라엘의 어떠한 배상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음은 별론으로 한다.
- ⁷ *Ker v. Illinois*, 119 U.S. 436 (1886); *Frisbie v. Collins*, 342 U.S. 519 (1952); *United States v. Alvarez-Machain*, 504 U.S. 655 (1992). 다만, 납치 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 행위가 수반되었으면 관할권이 부정될 수 있다. *United States v. Toscanino*, 500 F.2d 267 (2d Cir. 1974).
- ⁸ Marcus Weisgerber, “150 Aircraft Took Part in Operation to Capture Maduro”, *The Wall Street Journal*, Jan. 3, 2026.
- ⁹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S.A.).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86*, p.4, para 195.
- ¹⁰ UN Security Council,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UN Doc. S/PV.10015, Oct. 10, 2025, p.13.
- ¹¹ Report of the Credentials Committee, UN Doc. A/80/547 (25 November 2025), para 13. 미국과 함께 유엔 총회 제80차 회기 신입장 위원회 구성국인 러시아는 “보고서가 컨센서스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그 채택 이후에 이루어진 어떠한 유형의 발언도 해당 결정을 훼손하거나 약화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Ibid. para 14.
- ¹²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 정부 자금이 동결됨으로써 변호 비용 충당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한 변호인 선택권 침해 관련 공소 기각 신청이 제기된 가운데 재판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연기된 상황이다.

필자 소개

임예준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국제법 헌안 Brief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대한국제법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